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운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1.

발의자 : 최운열 · 김성수 · 이철희
한정애 · 채이배 · 나경원
권미혁 · 조배숙 · 서영교
송옥주 · 김종석 · 김삼화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,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직위인 이 사회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.

여성 이사의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으며, 노르웨이, 핀란드, 스페인, 벨기에,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사의 여성할당제를 법률로 도입하고 있음.

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부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성(性)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,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이사

진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및 제165조의20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9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이사회의 성별 구성 및 제165조의20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

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5조의20(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) 자산총액[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(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]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(性)의 이사가 이사회 정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)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

다.

제3조(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165조의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65조의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9조(사업보고서 등의 제출) ① (생 략)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~ 3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59조(사업보고서 등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<u>3의3. 이사회의 성별 구성 및</u> <u>제165조의20의 기준에 적합</u> <u>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</u>
4. · 5. (생 략) ③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	4. · 5. (현행과 같음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<u>제165조의20(이사회의 성별 구성</u> <u>에 관한 특례) 자산총액[금융업</u> <u>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</u> <u>의 경우 자본총액(대차대조표</u> <u>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</u> <u>뺀 금액을 말한다) 또는 자본</u> <u>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]이 2</u> <u>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</u> <u>경우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</u> <u>특정 성(性)의 이사가 이사회</u>

정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
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